

의정활동보고서

제198회 임시회(2005. 4. 14 ~ 4. 2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98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비회기중에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일기불순으로
여의치 못하여 이번 회기 중에 독도를 방문하여 소중한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대내외에 널리 천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계속되고 있는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강구하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제관 여러분!

최근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 해일 등과 같은
돌발적인 대형 재난상황과, 이번 식목일에 강원도 양양
고성 지역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되고 막대한 산림과 재산 손실을 가져온

대재난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허술한 관리체제를 지적하고 반성해 왔지만 매번 재난대처 자세와 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견되지 않는 전방위적인 재난사태에 대응하여 신속한 정보체제와 장비의 현대화는 물론이고 지역별로 예상되는 재해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도민의 안정된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응 프로그램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난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능동적으로 정책대안을 찾아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4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쯤 챙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별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도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의정
수행으로 도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VI. 기타사항

VII. 5분 자유발언

부 록

☐ 조 례 안

1.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

☐ 동 의 안

1.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설립에 관한 건

2. 경상북도와 스페인 가스띠야 레온주간 자매결연 체결안

.....

☐ 기 타 안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98회 임시회는 2005년 4월 14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여 4월 26일까지 13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5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4월 14일(목)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기대·채희영의원)을 청취한 후, 제198회 경상북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4월 14일부터 동월 26일까지 13일간 조례안·동의안 등 심사와 영덕, 울진 등 도내 시·군 사업장과 사회복지시설, 수해복구사업장 등을 현지 확인 하였다.

4월 26일(목)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개정 조례안과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설립에 관한건 등 2개 동의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제1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 공고일 : 2005. 3. 31(목)

라. 집회일시 : 2005. 4. 14(목)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5. 4. 14 ~ 4. 26 (13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 (누계 75회)

○ 상임위 회의 : 5회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4.14(목) 11:00 (제1차)	1. 5분 자유발언 ○ 김기대 의원(성주군, 건설소방위원회) ○ 채희영 의원(문경시, 경제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4.14(목) 11:00 (제1차)	2. 제1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2005. 4.26(목) 11:00 (제2차)	1.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보고 2.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설립에관한건 3.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간 자매 결연 체결안 4.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 건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4.14(목) 13:00(제1차)	○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기획과학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4.14(목) 13:30(제1차)	○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의결유보
2005. 4.18(월) ~ 4.20(수)	○ 현지확인 - 영덕풍력발전단지 - 울진원자력발전소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4.18(월) ~ 4.19(화)	○ 현지확인 - 사회복지시설 방문 (3개소) - 다부동 현충시설 방문 - 수해복구사업 현장 (1개소)	
2005. 4.25(월) 14:00(제1차)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유보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4.14(목) 14:00	○ 간사선임의 건	

〈농정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4.15(금) ~ 4.16(토)	○ 현지확인 - 신물질연구소(의성) -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안동) 등	

〈경제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4.14(목) 14:00(제1차)	○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간 자매결연 체결안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회의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5. 4.14(목) 14:00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4 (295)	4 (291)	4 (257)	(33)	(1)	(1)	(3)	
조 례 안	소 계	1 (142)	1 (139)	1 (121)	(17)	(1)		(3)	
	의 회 제 안	(15)	(14)	(5)	(8)	(1)		(1)	
	도지사 제 출	1 (105)	1 (103)	1 (96)	(7)			(2)	
	교육감 제 출	(22)	(22)	(20)	(2)				
예산 · 결산		(25)	(25)	(12)	(13)				
동의 · 승인		2 (78)	2 (78)	2 (77)	(1)				
건의 의 안		(11)	(11)	(10)	(1)				
결 의 안		(11)	(11)	(11)					
기 타 안		1 (28)	1 (27)	1 (26)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6 (300)	4 (293)	1 (140)	(25)	2 (78)	(11)	(11)	1 (28)	(1)	(1)	2 (5)
의 회 운 영	(10)	(9)	(6)				(2)	(1)	(1)		
기 획 과 학	2 (23)	1 (21)	(13)		1 (6)	(1)		(1)			1 (2)
행 정 사 회	1 (84)	(82)	(55)		(24)	(1)	(2)				1 (2)
교 육 환 경	(39)	(39)	(28)		(9)	(1)		(1)			
농 정	(20)	(19)	(6)		(11)	(2)					(1)
경 제 문 화	1 (44)	1 (44)	(18)		1 (22)	(2)	(2)				
건 설 소 방	1 (21)	1 (21)	1 (12)		(6)	(2)		(1)			
특 별	(25)	(25)		(25)							
본회의	1 (34)	1 (33)	(2)			(2)	(5)	1 (24)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4 (115)	1 (13)	(13)	(11)	2 (22)	(9)	1 (9)	(14)	(10)	(14)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1 (6)		(1)		(1)		1 (2)			(2)
행 정 사 회	(15)	(8)	(3)	(1)	(1)					(2)
교 육 환 경	(24)			(1)		(9)		(13)		(1)
농 정	(9)			(1)	(1)				(7)	
경 제 문 화	1 (25)	1 (2)	(9)	(3)			(7)			(4)
건 설 소 방	2 (33)	(3)		(5)	2 (19)			(1)	(3)	(2)
특 별 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10)	(110)				4 (5)
의회운영						
기획과학	(5)	(5)				1 (1)
행정사회	(15)	(15)				
교육환경	(23)	(23)				(1)
농 정	(9)	(9)				
경제문화	(24)	(24)				1 (1)
건설소방	(31)	(31)				2 (2)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5. 4. 7)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기획과학 (2005. 4. 8)
경상북도지사 (2005. 4. 7)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설립에관한건	기획과학 (2005. 4. 8)
경상북도지사 (2005. 4. 7)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간 자매결연 체결안	경제문화 (2005. 4. 8)
경상북도지사 (2005. 4. 7)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05. 4. 8)
경상북도지사 (2005. 4.18)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5. 4.18)
경상북도의회의장 (2005. 4.18)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포일
2005. 3.29	경상북도 교육감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4.11
2005. 3.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2005. 4.14
2005. 3.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4.14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포일
2005. 3.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	2005. 4.14
2005. 3.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4.14
2005. 3.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4.14
2005. 3.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4.14
2005. 3.29	경상북도 지 사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 운영 지원조례	2005. 4.14
2005. 3.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05. 4.14

VI. 기타사항.

○ 중소기업지원센터 동부지소 개소식

- 일 시 : 2005. 3. 31(목) 11:00
- 장 소 : 중소기업지원센터 동부지소(포항)
- 참 석 : 이철우 의장, 이원만 기획과학위원장, 한혜련 경제문화위원회
간사, 이 달 의원

○ 고령 대가야 박물관 개막식

- 일 시 : 2005. 4. 2(토) 14:00
- 장 소 : 고령 대가야박물관 현장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박영화 건설소방위원장
방대선 의원

○ 지역노사협력 실현방안 토론회

- 일 시 : 2005. 4. 4(월) 15:00
- 장 소 : 인터불고 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33회 보건의 날 행사

- 일 시 : 2005. 4. 7(목) 11:00
- 장 소 : 영양공설운동장
- 참 석 : 권경호 예결특위위원장

○ 의성소방서 개소식

- 일 시 : 2005. 4. 12(화) 14:00
- 장 소 : 의성군 봉양면
- 참 석 : 이철우의장(축사),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화 건설소방위원장,
장 욱 건설소방위원회간사

○ 중국 호남성 의회 대표단 접견

- 일 시 : 2005. 4. 12(화) 12:00 ~ 20: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손규삼 부의장, 이정백 부의장,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Ⅶ. 5분 자유발언

제198회(임시회)

2005년 4월 14일(목)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金基大 議員

성주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우리 이철우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은 4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가지고 지역행사에 많이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과학의 달이요, 저는 항상 문화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3개 시·군에는 이 문화행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도와 국정교과서 왜곡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사상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어른들로부터 일본 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놈은 놈 자 자니까 비하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저렇게 부르나 했더니 국교 정상화가 되고 이랬을 때는 참 가까운 이웃으로 여겼는데 근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역시 일본 놈 소리를 듣는 것이 맞구나, 선대들이 한 그 말이 옳았구나’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일 낫다고 했습니다. 이 미친놈을 때릴 몽둥이를 우리는 들 힘도 없고 때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친 인간들은 약자를 항상 괴롭히는 것이 정당한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웃 일본을 보니까 윤리 도덕은 그분들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독일에서 일본을 서운하게 대접받는다고 나쁜 나라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내에서 국민과 더불어 항일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니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성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지방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그 주관을 모독을 하고 그분의 인격을 나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정설도 있고 전설도 있고 가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바를 집행부에게 말씀드리니까 제 말이 맞으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 주시고 맞지 않으면 의원으로서 5분 자유 발언을 했겠지 하고 들어

줘도 좋습니다.

인근 고령군에 고천원 제사를 이달 4일 날 지냈습니다. 그 고천원제라 하는 그 고지는 가야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 신을 모시는데, 첫째 신은 천신 ‘이비가’ 라고 해서 신라시대 최치원 호는 고운입니다. 그 선생의 석리정전에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두 번째 모시는 신은 가야 산신 정견모주라 합니다. 이 분도 역사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대가야국의 초대왕인 이진아시왕이라는 분을 또 모십니다.

이 세 분은 우리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하나의 지조, 신으로서 모시지만 가야의 초대 건국왕도 역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이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 다섯 번째 제가 여기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천조대신 우리 어릴 때 천조대신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사람이 일본 천왕의 신입니다. 일본 개국공신의 시조입니다. 이 사람이 고령군 가야대학교 거기에서 고천원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논리가 지금 정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인, 여인이고 이 사람의 동생이 소전오존이라 해 가지고 수사노오노 미코토 하는 것은 이 천조대신의 친 남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가야대학교 고천원에서 지난 4일 날 제사를 지냈습니다.

초헌관은 제일교포요 두 번째 절하는 아헌관은 일본사람이요, 세 번째 마지막 절하는 종헌관은 가야대학교 총 학생회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에 헌관으로 모시는 것은 동이라 해서 아이 동 자 해 가지고 미혼은 제관으로 어디에 가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고령군 행사의 종헌관을 아직까지 공부를 하는 그 대학교 총회장을 종문관으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조상 단군을 비롯해서 박혁거세다, 김알지다, 모두 신화에서 다 국가이념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역사에, 한국역사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이조실록 고려사에 어디를 들어가 보고 어느 대학교수 논문을 봐도 일본 천왕의 시조가 고령 고천원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천원은 높을 高 자, 하늘 千 자, 근원 原 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 보고 모든 자료를 보니 이 고천원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하늘나라 시조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가지고 일본을 이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하지 그 가야대학교 조그마한

동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역사가 태어났다는 역사가 불과 7년 되었습니다. 7년 전에 마부치라 하는 일본 고고학자가 수십년을 중국, 한국, 일본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시조가 고천원에서 태어났다 하는데 그 고천원이 어디냐 이렇게 하다가 고령에 와보니 고령 금산에서 보니까 아 “여기가 바로 고천원이구나!” 이렇게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 뒤에는 많은 숨은 이야기가 시간관계상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화시켜 가지고 고천원이 우리 가야대학교에서 태어났다 그래 가지고 비문을 내가 여러 번 가서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여기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나라를 세웠으니 우리 일본하고 한국은 화합을 해야 되고 잘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대학교 총장의 비문내용입니다.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서 주무국장, 우리의 시조도 아닌 일본의 시조가 고천원이 고령 가야대학교에서 태어났다 하는 학술적인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아무리 문화행사도 좋고 사람을 많이 동원시켜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사를 아주 잘 하는 양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고 23개 시·군에 초청장을 내고 사람을 동원시켜야 되지 남의 조상 모시는데 500명이 참석했다, 400명이 왔다 우리가 왜 숫자를 왜 올리며, 경상북도 예산 가지고 왜 제사장을 보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남의 잔치에 대추 놓아라, 팔 놓아라, 콩 놓아라, 떡 놓아라 하는 것 간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관심보다는 비판이 낫습니다. 비판은 바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7년의 역사밖에 안 되었습니다. 7년 전에 그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금년이 일곱 번째 지내는데, 그 때 부터 지금까지 7년간 누구라도 이 사실을 말할 줄 알았는데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해야지만 되는데 그 소리를 못해 가지고 속병이 나서 죽어갈 때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서 당나귀 귀라고 하니까 속병이 나아지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동화도 있습니다.

저라도 경상북도의회에서 일본 천왕의 시조가 고령읍 가야대학교

조그마한 동산에서 태어났다 해 가지고 비를 세우고 야단을 뽐니다.
거기에 국내 저명인사들이 축하한다는 나무도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앞에 세 분의 신에게 나무를 심은 것이지
일본 조상을 위해서 심은 나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맞으면 주무국장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밝혀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초자치단체가 한다고 나 몰라, 나는 모르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얼마 전에 경주에 벚꽃 마라톤 축제를 했습니다. 이는 경주시
하고 요미우리 신문 하고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金基大議員 아니 벌써 10분이 되었어요? 1분만 더 주세요.

그 마라톤 기념메달이 경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로 거기에 인쇄가
되어 가지고 모두 받았습니다. 천년의미소라 해서 수막새에 기와조각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 경주의 문화를 알린 이 마당에 그 문화를 세계에 발표
하는 그 자리에서 경주와 광주를 구별 못해서 메달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돌렸다. 국제적인 망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메달을 대구·경북에는 만드는 업자가 없는지 공교롭게도
서울에 했습니다. 서울에 의뢰하니 서울업자가 경기도 광주보다, 경북의
경주는 별로 기억에 안 남으니까 아, 경기도 광주가 더 크니까 광주로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무식해서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관심이 없어 했는지, 앞으로 도 집행부는 23개 시·군에 시장·
군수의 임기가 다 되어 간다고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니 해이한
마음을 잘 다독거리서 도에서도 그런 에러가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더 또 할 말씀도 적어왔지만 의장님이 시간이 너무 지났다
하니까 내가 마지막 종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서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에서 치루는 많은
문화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蔡熙永 議員

문경시 출신 채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이의근 지사와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하여 배석한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은 경제문화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가슴이 멈추는 중압감으로 긴장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권을 뒤흔들고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는 치욕과 모멸로 36년을 노예같이 보낸 한 풀이를 하지도 못한 채 또다시 일본이 독도침탈 야욕과 역사교과서 왜곡·날조 등 제2의 국치적 행동을 보임에 따라 전국 방방곡곡이 이번에는말로 일본의 야만적인 버르장머리를 고쳐 혼 줄을 내주어야 한다고 일장기를 불태워 짓밟으며 노도와 같은 함성으로 전체국민이 쫓기하여 단지하여 혈서로서 항거하고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절규한지 어제이며, 경상북도와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 파기가 서류에 잉크 물도 마르지 않았으며, 7,000만 국민의 호통의 여운이 소멸되지도 않았는데 이의근 지사께서는 시마네현의 지사를 동북아자치단체연합개소식에 초청했다니 이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까? 7,000만 겨레의 독도사랑의 피맺힌 함성과 경상북도의회의 작은 절규도 조정이 울리고 말았습니다.

오호통재라! 이 어찌 카멜레온 같은 변장술의 두 얼굴입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숨겨간 수많은 독립투사들, 그리고 정신대 여인들, 징용으로 끌려가 백골이 된 젊은이들의 한 맺힌 영혼을 어떻게 위로하여 달래일 것인지 지사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도문제 역사교과서왜곡문제 등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4만여 네티즌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동해바다 어디에도 다케시마는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역사교과서 왜곡 만행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여 놓고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망발의 초청입니까?

자매결연 외에 모든 교류를 단절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면 통보하여 놓고 이 무슨 말기적 오판이십니까?

이조 개국 초기 두문동 72현의 역사를 아실 것입니다. 임기 말 산뜻하게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흑백지간의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 크나큰 오점을 통탄할 뿐입니다.

우리의 동족인 북한도 5일 강경하고도 확고한 경고로서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일본 문무성의 역사교과서 개악지시는 명백한 도발로서 억지주장인 것을 지구촌 어디에서도 아는 사실입니다. 후소야가 펴낸 역사교과서에 37군데나 한국사가 가짜로 날조되어 기록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우리의 외무장관이 일본외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삭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는 투의 외교나 하고 있으니 꼴불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정부나 경상북도도 확실하고 명백한 대일정책으로 행동을 앞세워 보여줄 때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토속적일지는 몰라도 미친개에는 문경새재에서 많이 나는 무푸리 나무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듯이 일본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가슴에 큰 못을 박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경천동지하리만큼 충격요법을 써야 할 때라고 정부와 경상북도에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발버둥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양양, 고성지구 산불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나서 재해지역 선포이니 조속복구이니, 전액 정부지원이니 하는 사탕발림의 남가일몽에 빠지지 말고 예방에 주력하여 실효를 거두는 정책이 아쉽듯이 대일문제도 이제는 극히 충격요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수교를 하지 않고도 우리는 살아온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태여 애걸을 하듯 턱걸이 외교를 하면서 조용한 외교를 표방한 성과가 국치를 초래한 것이 소득이라면 실로 망국적 외교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의 행정관할권이며, 역사교과서를 미화 왜곡 날조해도 역사는 사실을 입증 기록하며 흘러갈 뿐입니다.

천지는 요동치고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진작 앞장을 서서 호통치고 몸을 불살라야 할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면서 깨어날 줄 모르고 있으니 하늘을 우러러 태양을 바라볼 면목이 없는 실정입니다. 뒷북이나 치면서 노니는 장단은 굿거리장단으로서 타매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혼한 독도특위 하나 구성하지 못하고 마치 활엽수

앞 뒤에 붙어 잠자는 매미 같은 구성원의 한 사람이며, 자칭 타칭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국난이라 하리만치 어려운 시기에 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하나 입안하지 못하였으니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들 앞에 얼굴을 붉히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슴에 깊이 간직한 채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조 례 안 : 1건】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4. 2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도시재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건설관련 공무원 및 전문적 식견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3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 본청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
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전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설계의 사전심의) ①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2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2. 총공사비 2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 : 7일 이내
3. 총공사비 300억원이상의 공사 : 10일 이내

②위원장은 설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기술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심의”라 한다) 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공사 다만, 동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2. 기타 총 공사비가 심의대상 미만의 공사중 특수공법 등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공사

제11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제85조 제5항,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제12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 기술심의 신청서와 사업요약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 설계 제출 불가능 시에는 그 사유서)

4. 제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재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 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중기부분 내역서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심의 상 필요한 자료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존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 계약 이행 완료일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심의의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라 함은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제15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심의수당 등)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사전 심의수당 : 설계심의(설계공사) 1안 건당 30,000원이하

2. 일비 및 여비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제17조(수수료) 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심의 요청 시에는 별표1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경상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심의 요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구 분		심의수수료 산출기준(1건당)
①조례 제11조 1호 및 2호에 의한 심의 사항		(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수 +여비
②조례 제11조 3호에 의한 입찰방법 심의 사항		참석수당×심의위원수 +여비
③조례 제11조 4호에 의한 일괄입찰·대안입찰 심의 사항	입찰안내서	(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수 +여비
	기본설계	(심의수당×업체수×심의위원수) + (참석수당×참석위원수) + 여비
	실시설계	(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수 +여비
④기타 심의사항		(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수 +여비
적 용 기 준		심의 및 참석수당의 금액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신 청 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설계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준공예정년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 설 기 술 변 경 심 의 신 청 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의 설계변경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설계금액 :
- 변경설계금액 :
6. 착 공 년 월 일 :
7. 준공예정년월일 :
8. 계 약 업 체 명 :
9. 변 경 사 항 :
10.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회 의 록

- 1. 안 건 :
- 2. 회의일시 :
- 3. 장 소 :
- 4. 참 석 자

일련번호	위 원 성 명	서 명	비 고

- 5. 회의결과 :

【별지 제4호 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대 장

심의번호			심의일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시 행 자		
사 업 비		설 계 자			
심의위원					

○ 의결내용

【별지 제5호서식】

사 전 심 의 검 토 의 건 서

심의 안건명 :

심 의 분 야 :

의 건 :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동 의 안 : 2건】

-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설립에 관한 건
-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간 자매결연
체결안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설립에관한건

경상북도의 지능로봇에 관한 특화된 분야를 활용하여 국내 지능로봇 연구개발의 집적지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설립에관한건을 의결한다

1. 의 결 사 항

- 법인명칭 :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 법인사업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운영 및 관리
 - 지능로봇의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
 - 지능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재교육
 - 특화된 로봇 연구개발을 통한 국내 지능로봇 개발 선도 역할 수행
 - 체험관 · 과학관 · 학술관을 통한 전시와 교육을 병행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

2. 향 후 일 정

- '05. 5 : 재단설립 발기인 대회
 - 재단법인 설립 기본재산 확보 : 1억(도 1)
- '05. 5 :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설립인가(산업자원부)
- '05. 5 :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설립등기(포항지방법원)

3. 기 대 효 과

- 지능로봇기술 선도와 산업화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 우수인력 양성과 과학기술마인드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벤처기업 창업과 대기업의 지능로봇사업 유치를 통한 고용확대 효과

[참고사항]

포항지능로봇연구소설립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포항시 남구 효자동 포항공과대학교 내
- 사업기간 : 2004. 10. ~ 2010. 9. (6년간)
- 사업규모 : 부지 2,500평, 건물 2,000평(지하1층, 지상4층)
- 조직체계 : 1실장 5팀 34명
- 총사업비 : 480억원(국비 180, 도비 75, 시비 50, 기타 175)
- 추진주체 : 경상북도 · 포항시
- 주관기관 : 포항공과대학교

□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0410-059)	2차년도 (0510-069)	3차년도 (0610-079)	4차년도 (0710-089)	5차년도 (0810-099)	6차년도 (0910-109)
계	48,000	5,500	5,800	10,600	10,800	9,400	5,900
국 비	18,000	2,000	2,000	5,000	5,000	4,000	
도 비	7,500	600	800	2,000	1,700	1,200	1,200
시 비	5,000	400	500	1,300	1,200	800	800
민 자	17,500	2,500	2,500	2,300	2,900	3,400	3,900

※ 사업비내역 : 건축비 130, 장비구입비 100, 연구비 190, 운영비 60억원

□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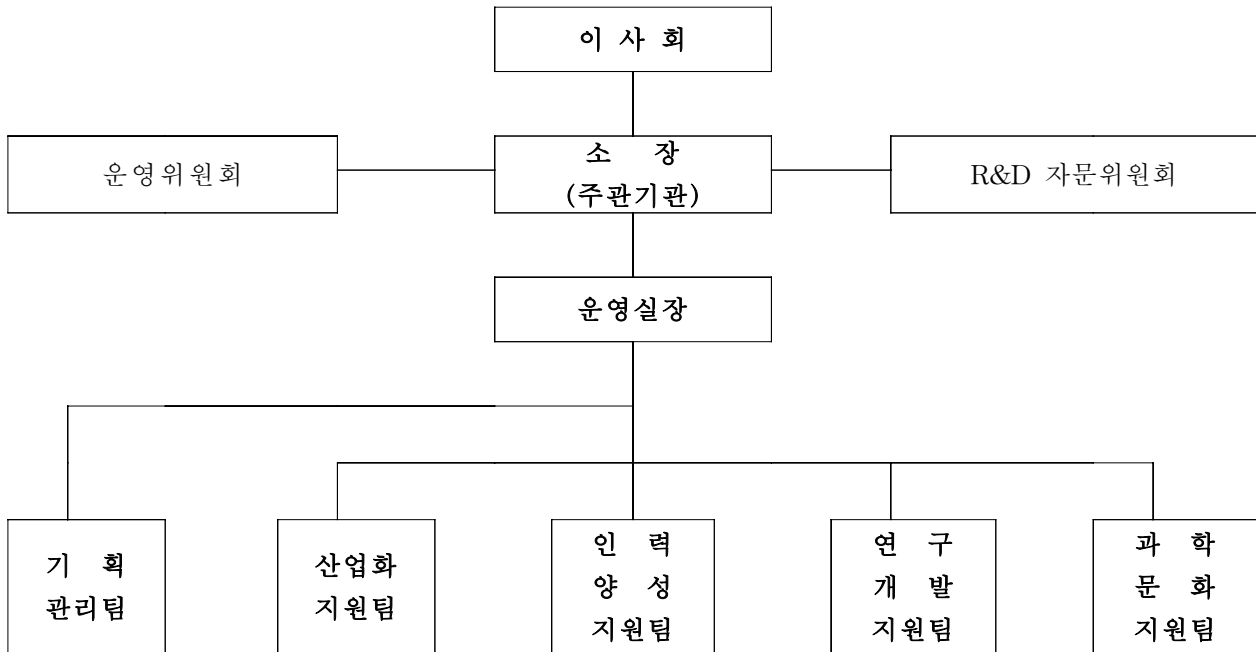
- '03. 5 : 지능로봇연구소 설립을 위한 용역 실시(포항공대)
- '04. 4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 '04. 5 : 사업계획서 제출(과학기술부)
- '04. 8 : 사업 선정(과학기술부)
- '04.10 : 1차년도 협약체결(과학기술부·도·포항시·포항공대 4자간)
- '05. 1 : 주관기관 협약체결(도·포항시·포항공대 3자간)

□ 사업기간(6년)별 추진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 사업계획서 · 제출 및 사업 · 선정 · 법인설립 · 부지조성 · 연구소 건축 · 공사 착공	· 연구소 건축 · 공사 · 사업홍보 · 장비구입 · 장비임차 · 특화분야 · 연구	· 연구소준공 · 장비구입 · 장비임차 · 연구사업 · 수행 · 사업홍보 · 벤처인프라 · 구축	· 장비구입 · 장비임차 · 연구사업 · 수행 · 연구 성과 · 산업화 · 창업교육 · 기술정보 · D/B · 사업홍보	· 장비구입 · 장비임차 · 연구사업 · 수행 · 연구 성과 · 산업화 · 자립기반 · 기술정보 · D/B · 사업홍보 · 클러스터기반 · 구축	· 장비구입 · 장비임차 · 연구사업 · 수행 · 연구 성과 · 산업화 · 자립기반 · 기술정보 · D/B · 사업홍보 · 해외기술 · 교류

□ 조직과 인력

○ 조직



○ 인력

구 분		1차년도 (‘04.10-’05.9)	2차년도 (‘05.10-’06.9)	3차년도 (‘06.10-’07.9)	4차년도 (‘07.10-’08.9)	5차년도 (‘08.10-’09.9)	6차년도 (‘09.10-’10.9)
전문 요원	교수급	27	29	31	33	37	40
	전임연구원 (학생)	2 (150)	6 (200)	8 (220)	10 (230)	10 (240)	10 (240)
행정관리요원		5	5	5	8	8	8
계		34 (150)	40 (200)	44 (220)	51 (230)	55 (240)	58 (240)

※ 1. 2004년은 산업자원부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지능로봇) 선정을 위한 준비단계였음

2. 전문요원중 교수급은 사업지원대학·연구기관 인력 활용

□ 예산 확보 현황

- 1차년도 : 현금 3,0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600, 시비 400)
현물 2,500백만원(포항공대)
- 2차년도 : 현금 3,3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800, 시비 500)

[참고자료]

□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선정결과

- 선정일 : 2004. 8.
- 협약체결 : 2004. 10.
 - ☞ 과학기술부 · 경북도 · 포항시 · 포항공대 4자간 협약
- 선정결과

구 분	사 업 명 (예 산)	선 정 결 과	비 고
2004년도 사업	지자체 연구소육성사업 (105억원)	•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부산) • 순창장류연구소(전북) • 임실치즈과학연구소(전북) • 전주고등생물소재연구소(전북) • 구례야생화연구소(전남) • 포항지능로봇연구소(경북)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제주) • 차세대플라즈마신산업기술연구소(강원)	105억중 경북도 20억
2005년도 사업	지자체 연구소육성사업 (105억원)	• 미래의약산업개발및약효평가연구소(경기) • 하동녹차과학연구소(경남) • 장흥버섯연구소(전남) ※ 2005년도 예산 105억원에는 2004년도 8개 사업예산 포함	”

※ 업무소관부처 변경 : 과학기술부 → 산업자원부('05.1)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간 자매결연 체결안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간에 교류여건이 성숙되고 상호 공동발전이 기대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간의 자매결연 체결안을 의결한다.

1. 의결사항

- 건 명 :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간 자매결연 체결
- 자매결연 주요 협정내용
 - 경제, 문화, 관광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교류확대
 - 행정, 민간 참여로 공동 이익과 발전에 기반을 두고 협력
 - 교류협력사업 공동 개발, 실천 등 상호 지속적인 노력 경주
- ※ 자매결연 협정서는 양 도·주간 협의하여 추후제작
- 체결방법 : 자매결연 협정서에 양 지사 서명

2. 향후일정

- 2005. 4월 도의회 의결
- 2005. 6월 자매결연 체결(일정 별도수립)

3. 기대효과

- 스페인 북부에 위치하여 남유럽 및 아프리카 진출 거점 확보
- 우수한 인력과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으로 발전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에 경북의 첨단기술과 인적자원 교류 기대
-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보유, 문화·관광교류 활성화 기대

붙임 :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 자매결연 체결 설명자료

경상북도와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간 자매결연 체결 설명자료

1. 자매결연 제안 자치단체

-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

2. 필요성

- 스페인 북부에 위치하여 유럽 및 아프리카 진출거점 확보
- 우수한 인적자원과 자동차 및 에너지산업 등의 첨단기술발전에 대한 도내 첨단기술 및 인적교류 기대
- 편리한 교통,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가 기대됨

3. 경북-까스띠야 레온주 교류 추진경위

- '04. 8 권영호 인터불고호텔회장을 통한 교류희망 전달
- '04. 10 토마스 비아누에바 경제장관 방문(4명)
 - 10.12 교류의향서 체결
- '05. 1 토마스 비아누에바 경제장관겸 부지사의 초청장 접수
- '05. 3 스페인방문 및 주지사초청 서한문 발송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 9. 생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5. 양 자치단체 비교

구 분		경 상 북 도	까스띠야 레온주
인 구		280만명	248만명
면 적		19,023km ²	94,273km ²
산업경제	1인당GDP	'03년 10,000불	'03년 미화 12,725불
	경제성장률	'03년 7.1%	'03년 3.1%
	주요산업	• 전자산업(구미) • 철강,기계류(포항) • 섬유,금속,광화학산업	• 자동차 산업 (세계7위규모, 150여개 업체) • 화학 및 제약업 (스페인내 5번째 생산)
지 역 특 성		•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 • 역사와 전통의 고장 • 농업과 공업 고루 발달	• 이베리아반도의 북부 위치 • 문화유적, 관광자원 풍부 (미래를 가진 과거의도시) • 9개의 시(Province)로 구성
자매결연단체		• 미국 오하이오주 • 중국 하남성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남아공 노스웨스트주 • 프랑스 알자스주 • 터키 불사주 •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 인니 족자카르타주	• Poitou-Charentes • Aquitaine • France, Ireland, Spain Portual, United Kingdom • Flanders • Portugal • Northen Portugal

까스띠야 레온(CASTILLA Y LEON)주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 스페인북부(9개의 자치주, 포르투갈과 경계)
 - 포르투갈과 프랑스로 가는 길목에 위치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연평균 기온10℃)
- 면 적 : 94,273km²(스페인에서 가장 큰 주, 경북의 5배)
- 인 구 : 248만명(인구밀도26.4명/km²)
- 행정구역 : 9개의 시(州都 발라돌리드 시)
 - ※ 주지사 : 후안 빈센트 헤레라 캄포(Juan Vicente Herrera Campo)
- 주요도시 : 아빌라, 부르고, 발렌시아, 살라망카, 세고비아 등
- 주의회 : 선출직, 의원 83명, 임기4년
 - ※ 주의회의장 : M. Jose Manuel Fernandez Santiago
- 종 교 : 카톨릭 94%, 기타 6%
- 문화유산 : 다양한 문화 공존(스페인내 최대 관광지)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산재(아빌라, 살라망카, 세고비아)
 - 스페인의 특유의 건축양식(교회, 대성당, 박물관 등)
 - 백설공주성으로 유명한 Alcazar
 - 스페인어의 모태지역 - 전세계 4억명 사용
- 교통망(인프라 구축)
 - 국내·국제공항 : 4개(발라돌리드, 살라망카, 레온, 부르고스)
 - 바라하스(마드리드)국제공항과 2시간 거리
 - 주요도로 확장 : 현재 1,200km → 2,500km('07까지)
 - 철로 : 마드리드-세고비아-발라돌리드간 고속철도(AVE) '06년 개통
 - 프랑스, 포르투갈,북스페인 연결점

- **교육현황** : 높은 산업생산성, 스페인 평균보다 저렴한 노동력제공
 - 8개 종합대학(10만명), 350개 중등교육기관(50만명), 23개 외국어교육센터(1만명)
- ※ 살라망카 대학교: 1218년 창립, 유럽 내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 (매년 30,000여명 수용)

□ 경제 및 산업현황

○ 주요경제지표

- 총 GDP : 41,092백만불
- 경제성장률 : 3.1%(2003) - 스페인·유럽 평균이상
- 산업비중 : 서비스업 (60%), 산업(19%), 건설(12%), 농업(9%)

【주요부문】

- **자동차산업** - 세계 7위 규모
 - 4개사의 자동차 공장(Renault 2, Nissan, Fiat-Iveco)
 - 130개사의 자동차 관련기업
- **음식산업 및 농업**
 - 다수의 식품 및 농업 회사 (3,500여 개)
 - 음식 및 농업 (스페인 생산의 11%, 3위 차지)
- **에너지 자원과 통신**
 -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분야
 - 스페인의 중추적인 에너지 제조지역, 풍부한 수자원
- **화학 및 제약**
 - 스페인 자치주 내에서 생산량 다섯 번째

○수 출

- 지역 : EU지역 국가 집중
- 품목 : 자동차, 농산물, 화학, 의약 및 화장품, 금속 및 기계류

○수 입

- 지역 : EU지역 국가, 미국, 일본, 한국 등
- 품목 : 자동차부품, 공산품

○한국과의 교역현황

(단위 : 유로화, 까스띠야 레온주 기준)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 출	6,506	11,280	11,982	13,933	11,353
수 입	8,755	12,503	13,295	16,625	16,194
무역수지	-2,249	-1,223	-1,313	-2,692	-4,841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고급 두뇌들의 풍부한 노동력
-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600여개의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 및 판매관련 정보 제공
- 150개의 산업단지 제공 : 저렴한 임대료
- 테크노파크 조성 : 보에시오 100개 업체 3센타 입주, 2개 건설 중

※ 경북도와 까스띠야 레온주와의 교류현황

- '04. 8 권영호 인터블고호텔회장을 통한 교류희망 전달
- '04. 10 토마스 비아누에바 경제장관 방문(4명)
 - 10.12 교류의향서 체결
- '05. 1 토마스 비아누에바 경제장관 겸 부지사의 초청장 접수
- '05. 3 도지사의 스페인방문 및 주지사초청 서한문 발송

【기 타 안 : 1건】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

의안 번호	295
----------	-----

제 의 년월일 : 2005. 4. 26

제 의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1. 주 문

경상북도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경상북도
교육청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9인을 선임한다.

2. 제의사유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련 경험자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나. 자치단체가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운용상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기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자 함.

3. 제의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 9인 (인적사항 : 붙임1)

- 도 의 원 (3인) : 박종욱·권종연·김석호의원
- 재무관련 경험자 (2인) : 신부일, 박상태
- 공인회계사 (2인) : 김효선, 김정호
- 세 무 사 (2인) : 문원호, 장성덕

나. 위촉기간 : 2005. 5. 20 ~ 6. 8(20일간)

※ 업무사정에 따라 검사기간 조정 또는 연장

다. 결산검사 대상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검사 선임위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연 령	주 요 경 력	연 락 처	비 고
계	9인				
도의원	박종욱	61세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위원 · 예산 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환경 · 자치 발전특위 · 예결특위위원	011-547-9565	
	권종연	49세	· 제7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 자치발전특위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과학위원. 예결특위위원	017-815-5600	
	김석호	46세	· 제7대 도의회 산업관광위 간사 · 제7대 도의회 행정사회위원	010-5515-2002	
재 무 경험자	신부일	61세	· 前.회계과 경리담당 · 前.교육사회전문위원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2004)	011-9381-2833	
	박상태	61세	· 前.경상북도교육청 관리국장	010-8872-4347	
공 인 회 계 사	김효선	45세	· 포항1대학 금융정보과 겸임교수 (’98~2001)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97) · 대구광역시결산검사위원(2000, 2003)	011-826-4083	
	김정호	34세	· 동아제약, 한국전화번호부, 대한지적공사, 대우자동차 등 회계감사, 회계 및 세무자문	016-811-3544	
세무사	장성덕	56세	· 2003 북대구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 2004. 3월 세무사 개업	016-814-2240	
	문원호	47세	· 76~’02 세무서 근무 · 2001. 1월 세무사 개업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2004)	011-9588-4043	

의정활동보고서(제198회 임시회)

2005. 5 인쇄 / 2005. 5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